

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: 2007. 1. 12(사천시장)

나. 회 부 : 2007. 1. 12(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11호)

다. 상 정 : 2007. 1. 23(제111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지역경제과장 : 강의태)

가. 제안사유

○ 근로자와 사용자·우리시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근로정책 및 실업·고용 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정협의회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1) 노사정협의회 기능(안 제2조)

-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
-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
-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
- 기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2) 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등(안 제3조 내지 제6조)

- 위 원 장 : 시장
- 부위원장 : 위원 중에서 호선
- 인 원 :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
- 위원의 임기 : 2년(연임 가능)

3) 노사정실무협의회 구성(안 제7조)

- 위 원 장 : 지역개발국장
-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함

다. 관계법령 : 「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

3. 검토의견(전문위원 : 정광수)

-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정책과 실업·고용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
- 조례(안)의 주요내용은
 - 노사정 협력방안과 실업 및 고용대책 등 노사정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)과
 - 15인 이내의 노사정 협의회 구성(안 제3조 내지 제16조) 및 노사정 실무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-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등 검토한 바 시행해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 :

질의위원	질의 내용	답 변 자	답변요지
제갑생 위 원	◦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를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?	지역경제과장 강 의 태	◦ 근로자·사용자 협의하여 선임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